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3. 전진숙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9.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상정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전진숙 의원)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취지는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므로 평가 실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개의무를 규정하여, 국민과 의료기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 제52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기관 정보 접근

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의료 분야의 복잡성과 예외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하여야 하는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화된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기관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